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7. 6 선고 2020가단1136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용섭

피 고 1. A

2. B

피고 A, B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3. D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현, 김현구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1. 피고 A, B는 원고에게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6,086,160원 및 그 중 각 12,362,159원에 대하여 2020. 6. 2.부터 2020. 9. 18.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망 E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32,172,321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 D는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 D가 지급받을 69,975,013원 중 32,127,321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망 E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9. 3. 14.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금액을 3,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한 각 신용보증약정(신용보증 약정 이율은 연 9%이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기한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망인은 그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G은행 대천지점으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 망인이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20. 6. 2. G은행에게 합계 50,113,50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러한 대위변제에 따라 원고가 망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구상금은 가(대)지급금까지 합산하여 57,561,504원[= 위 50,113,501원 + 가(대)지급금 7,448,003원]이다.

3) 망인은 2020. 1. 8. 사망하였고, 망인의 자녀들인 피고 A, B가 2020. 4. 27.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20느단33호, 2020느단34호로 망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망인을 각 1/2지분씩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나. 망인과 피고 D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1) 망인은 2019. 11. 5. 피고 D와 사이에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망인이
운영하던 H 대천점 부지와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1. 6.
피고 D에게 이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이라 한다).

2) 망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보령시 I아파트 J호(이하 ‘I 아파트’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I 아파트에는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8.
30.부터 2021. 8. 29.까지로 정한 임차권(2019. 8. 26.자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고 있었다. 망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인 2019. 9. 초순경 I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6,5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와 채권최고액 3,9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K의 각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였다. 망인은 2019. 12. 12. L에게 I 아파트를 2억 1,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합계 332,875,980원, I 아파트의 시가는 2억
1,500만 원이다.

4) 망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극재산으로 다음과 같이 합계 560,729,451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순번	채권자	금액(원)	비고
1	M조합	225,942,631	갑제9호증
2	D(피고)	69,975,013	"
3	충남신용보증재단(원고)	50,000,000	"
4	중소기업은행	4,302,827	"
5	신용보증기금	16,200,000	"
6	주식회사 N	6,947,320	"
7	O 주식회사	7,361,660	"
8	한국중부발전(임차인)	180,000,000	갑제8호증
	합 계	560,729,451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 및 배당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어 2020. 8. 12. P에게 매각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기일에서 2020. 9. 16. 2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D에게 채권액 69,975,013원 전액을 배당하고,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채권액 5,000만 원 중 25,389,183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보령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는 망인의 재산을 각 1/2지분씩 상속받으면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인 피고 A, B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6,086,160원[= (위 57,561,504원 - 위 25,389,183원) ÷ 2] 및 그 중 각 12,362,159원[= (위 50,113,501원 - 위 25,389,183원) ÷ 2]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6. 2.부터 원고가 구하는 피고 A, B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0. 9. 18.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발생되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23718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과 을 나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그 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2019. 3. 14.경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망인은 위와 같은 소극재산 이외에도 Q 2,316,409원, R 47,440,610원, S 33,796,846원, T 41,809,406원 등의 채무(이하 'Q 등에 대한 채무'라 한다)가 있는데다 당시 운영하던 업체인 H 대천점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는 등 재정이 악화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던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2020. 6. 2. 구상금채권이 성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망인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1) 앞서 본 증거들과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547,875,980원(= 이 사건 부동산 가액 332,875,980원 + 1 아파트가액 215,000,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던 반면, 위와 같은 Q 등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합계 560,729,451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피고 D는, 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운영하던 사업장인 H 대천점의 영업가치가 망인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 무자력을 판단하기 위한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고, 특히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데(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피고 D는 망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영업가치’가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것이 거래처로부터 받을 채권인지, 또는 비품 등 유체동산인지, 영업 기대수익이나 브랜드가치와 같은 무형의 자산인지 특정하지도 않았고, 그 가액을 증명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가능한 실질적인 재산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 D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중 한 사람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을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나아가 망인은 이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도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과 피고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망인이 피고 D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급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회복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융통한 돈으로 급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D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위와 같은 의도로 돈을 융통하여 급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호증, 을 나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 D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채무와 캐피탈사 대출금채무와 이자 변제,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한 사실, H 대천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 D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의 주장

피고 D는 망인의 친구로서 2019. 10. 말경 연말까지 급하게 쓸 목돈을 빌려달라는 망인의 부탁에 따라 2019. 10. 30.부터 2019. 11. 7.까지 사이에 합계 5,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19. 11. 5. 그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는데, 피고 D는 당시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 망인의 채무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선의였다.

2)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수익자가 채무자와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에 의하여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그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수익자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24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갑 제4호증, 을 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망인이 무자력이었거나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망인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망인은 2019. 10.경 친구인 U에게 H 대천점에서 사용할 장비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는 한두 달만 쓰겠다고 하며 6,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돈을 빌려 줄 여력이 없던 U는 마침 여유 돈이 있다고 알고 있던 망인의 친구이기도 한 피고 D에게 망인의 사정을 이야기하며 돈 대여를 부탁하였고 피고 D는 돈 대여의 조건으로 망인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였다. 이를 전해들은 망인은 I 아파트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그 후 U와 피고 D는 법무사 V 사무실을 함께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과 I 아파트에 대한 담보가치를 문의하였고, 위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W는 이 사건 부동산과 I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알려주었다.

② 피고 D는 2019. 10. 30. 배우자인 P 명의의 X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9. 11. 5. P 명의의 다른 X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망인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9. 11. 7. 위 P의 X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망인과 피고 D는 그 무렵인 2019. 11. 5.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작성하고 2019. 11. 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비록 피고 D와 망인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 D와 망인은 친구 사이이므로 피고 D로서는 위와 같은 계좌 거래 내역과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작성 및 그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피담보채권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③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M조합의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위 각 부동산에 가압류, 압류 또는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I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2019. 9. 초순경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가액 332,875,98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과 I 아파트의 시가를 합산하면 547,875,98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Y부동산시세에 의하더라도 I 아파트 시세는 2억 1,500만 원에서 2억 2,000만 원 가량이었으므로 부동산등기부상 추가 담보여력이 있어 위와 같은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부채권을 제하더라도 피고 D 입장에서는 담보물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등기부상 망인의 채권채무관계나 신용상태 등을 의심할 만한 여지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 D의 망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액수에 비추어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이 과도한 담보제공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이처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D가 망인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존재 또는 망인의 채권채무관계 및 신용상태 등을 추단할 수 있는 등기내역이나 자료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 D와 망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구체적인 신용상태나 재산상황이 그와 다름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 D에게 망인의 대여금 차용을 알선한 U 역시 피고 D의 채무 상태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I 아파트에 임차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I 아파트에 1억 8,000만 원의 임차권이 존재하고 있었고, 망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은행과 캐피탈 대출채무나 신용카드대금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피고 D로부터 2019. 11. 5. 송금 받은 5,000만 원 대부분을 위와 같은 캐피탈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채무 등 각종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 D는 근저당권자로서 담보 목적물의 가치가 돈을 대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과 I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위와 같이 확인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망인의 경제적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위와 같이 I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2019. 9.경 모두 말소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당시 피고 D는 망인의 재산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망인은 I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말소한 이후 피고 D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고 D로부터 돈을 대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I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D에게 이러한 사정을 모두 숨기고 돈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망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H 대천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D는 이에 대한 영업 가치도 충분히 있으리라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망인은 2020. 1. 8. 갑작스럽게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위와 같이 갑작스럽게 사망함으로써 H 대천점을 운영하던 망인의 채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고 D가 망인의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사망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⑦ 피고 D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망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D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소결

결국 피고 D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채대원

[별지]

부동산의 표시

[토지]

1. 충청남도 보령시 Z 잡종지 149㎡
1. 충청남도 보령시 AA 잡종지 106㎡

[건물]

1. 충청남도 보령시 Z, AA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수리점 98.94㎡, 끝.

